

박병호사님께

f: 522-9994

번역문(정대협 번역)

- 정대협

국제법판가협회의 권고

94/9/2

1. 일본은 모든 자료를 완전히 공개하고, 피해자가 그들의 요구를 주장할 수 있고, 문제해결을 할 수 있기 위한 행정적 포럼을 6개월내에 만들어야 한다.
2. 위에 권고한 것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, 일본은 전적으로 희생자들을 원상회복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. 원상회복이란 의료비, 주거 및 이와 비슷한 재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완전 배상을 의미한다.
3. 일본이 전 '군위안부' 피해자들에게 대한 배상은 위와 같이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이 문제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나라의 국제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정이나 중재전 위원단 같은 기구를 가능한 한 빨리 만들어야 한다. 그래서 민간단체나 피해자 개인이 그들 자신의 권리요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해야 한다. 그리고 이들은 법정이나 중재전위원회가 정한 규칙과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.
4. 위의 (2), (3)과 같은 권고가 재류중인 동안 일본정부는 피해자들에게 대한 긴급조치로서 그들의 권리나 주장에 손상시킴없이 각 피해자 개인의 재산을 위해 미화 \$40,000.⁰⁰ 정도를 증대지급해야 한다.
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민간단체는 일본정부에게 피해자들의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.
5. 만약 일본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현재 방침을 계속 고수한다면,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민간단체는 적합한 국제 기관이나 UN의 전문기구에 이 문제를 계속 상정 하미법 법적 문제에 대한 권위있고, 분명한 해석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 (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)의 권고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.
6. 한국정부와 필리핀 정부는 즉시 국제사법재판소에 '합판조약에 대한 해석' (영: 한국정부의 65년 한일협약-번역자 주)을 의뢰해야 한다.
7. 연합군의 가맹국들은 일본이 피해자들에게 재한과 배상의 올바른 조치를 책임있게 취하도록 이 문제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.

만약, 관련된 정부의 논쟁이 있을 경우, 이를 참조하여 1994년 10월에 ICJ(국제법 판가협회) 공식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.